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24 발의연월일: 2025. 1. 3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박해철 · 정준호

이학영 · 김승원 · 이재정

권칠승·안태준·허 영

고민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해상운송계약의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 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, 선적, 적부, 운송, 보관, 양륙과 인도에 관 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 실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를 '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'으로 한정하고 있어, 인공지능 등 자율운항시스템이나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, 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를 활용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책임지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

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, 해상운송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분배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95조).

법률 제 호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5조제1항 중 "선박사용인"을 "선박사용인(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격운항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제2항) 본문 중 "도선사,"를 "도선사나"로, "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"를 "항해·선박관리"로, "행위"를 "행위, 자율운항시스템의 항해·선박관리 관련 결함"으로 한다.

② 운송물의 수령·선적·적부(積付)·운송·보관·양륙 및 인도와 관련하여 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운항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멸실·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한 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 템의 결함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운송계약 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

정

아

개

제795조(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) 제795조(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)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 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 물의 수령 · 선적 · 적부(積付) · 운송·보관·양륙과 인도에 관 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 송물의 멸실・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.

<신 설>

----선박사용인(「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원격운항자를 포함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

② 운송물의 수령・선적・적부 (積付)・운송・보관・양륙 및 인도와 관련하여 「자율운항선 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운항시스템의 결함으 로 인하여 운송물의 멸실 • 훼 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손 해를 배상한 운송인은 자율운 항시스템의 결함에 법률상 책 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 ②운송인은 선장·해원·도선 사,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<u>항해</u>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<u>행위</u>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 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면한다. 다만, 운송인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을 행사할 수 있다.	
<u>③</u>	· <u>도선</u>
사나	<u>항해</u>
<u>· 선박관리</u>	<u>행위,</u>
자율운항시스템의	항해 • 선박
관리 관련 결함	
	.